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25 - 63호

2025년 대체인력뱅크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블라인드 채용 및 유의사항 안내》

- ◆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건명 : 2025년 대체인력뱅크(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환경미화원) 모집
- 대체분야 : 3개 분야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환경미화원)
- 선발예정인원 : 0명 (소요발생인원을 선발)
 - ※ 예비합격자는 소요발생인원의 2배수만큼 선발
 - ※ 선발 및 예비합격자는 해당 소요에 한하여 자격을 유지하며 이외 소요에는 자격을 가지지 않음
- 초과, 야간, 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 휴일 및 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 모집방법 : 공개경쟁(블라인드)
- 모집절차
 - 수시접수 - 정기 서류 심사(매월 10일)(소요발생시 수시 심사 실시)
 - 소요발생 7일 이내 면접심사
- 자격 유지기간 : 채용절차 진행 후 3개월(차후 채용절차 시 미적용)

○ 모집분야

연번	모집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모집사유	비고
1	수영강사	체육시설부	소요발생인원	휴직 대체	
2	수상안전요원	체육시설부	소요발생인원	휴직 대체	
3	환경미화원	도시미화부	소요발생인원	휴직 및 파견 대체	

2. 근로조건

○ 업무내용 및 임금

모집 분야	업무내용	임금
수영강사	• 수영 지도강습, 수영장 이용객 안전관리	시급 11,000원 *수영강습시 12,000원 수상안전근무시 7,000원 추가 수당 지급
수상안전요원	• 수영장 이용객 안전관리	시급 18,000원
환경미화원	•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와 환경 정비	환경미화직 1호봉 상당

○ 근무시간

모집 분야	근로시간	비고
수영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오전/오후 교대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조) 05:30~14:30 / (오후조) 12:30~21:3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 09:00~18:00(격주 근무) ※ 근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근무시간, 휴일근무 등) 	
수상 안전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오전조(5시간 근무, 30분 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06:00~11:30 - 휴게시간 : 09:00~09:30 • (월~금) 오후조(7시간 근무, 1시간 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13:00~21:00 - 휴게시간 : 18:00~19:00 • (토요일) 09:00~18:00(격주 근무) * 근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근무시간, 휴일근무 등) 	
환경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월~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 05:00~15:00 / 토/일/공휴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 	

- 초과, 야간, 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 휴일 및 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4. 응시자격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통자격요건 및 채용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결 격 사 유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통자격요건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취업승인)을 결정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제한 : 여수시 * 공고일 전일 기준 • 임 금 : 시급 18,000원 •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 23조 관련[별표6] 안전, 위생 기준에 따라, 수영장업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대한적십자사, 대한구조협회 등)에서 취득한 수상구조사, 수상안전요원 자격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환경미화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시기 : 대체인력 수요 발생시 • 근로기간 : 부서별 요청 기간 근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근무장소 : 여수시 전역 • 근무시간 : (월~금) 8시간 근무, 휴게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 05:00 ~ 15:00 / 휴게 : 08:00 ~ 09:00, 12:00 ~ 13:00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 만 65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준고령자 우선 고용(고령자 55세 이상/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 성 별 : 제한없음 • 지역제한 : 여수시 거주자 * 공고일 전일 기준 • 임 금 : 환경사원 1호봉 기준 지급 • 우대사항 : 환경미화원 퇴직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 채용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산율
(법정가점)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기타가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만 신청 가능한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을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
(기타가점)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가족 구성원 ※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각 전형별 만점의 5%

* 기타 가점 항목에서 2개 이상의 요인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하며, 법률가점 요인과 기타 가점 요인은 각각 적용한다.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31.(목) ~ 2025. 12. 31.(수) 24:00 까지
- 접수방법
 - 공단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www.yumcorp.or.kr/recruit/)
 - 방문, 우편 * 전남 여수시 여문2로 40(문수동), 2층
 - * 방문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이며,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이메일 (plus1037@yumcorp.or.kr)
-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각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③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내역 표시) 1부
 - ④ 세부 응시 자격 요건 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 ⑤ 가점항목 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6.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 예정일자 : 매월 10일 정기심사 실시 * 소요 발생 시 수시심사 실시
- 대 상 자 : 응시자 전원 * 수시심사는 소요 발생일 기준 D+3까지 제출한 인원내 한함
-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심사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된 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 응시 자격 요건 충족여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자격 미보유로 판정할 수 있음

- 서류합격자 발표 : 부서 요청 발생시 / 공단 홈페이지 및 개인 문자 발송

나. 면접심사

- 예정일자 : 소요발생 D+7 이내 * 면접당일 위원 교육 실시(블라인드 방식)
- 대 상 자 : 서류합격자 전원

- 장 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심 사 자 : 3명(내부 1, 외부 2)
- 면접방식 : 응시자 3~4명 단위 그룹 면접
 - 그룹당 15~20분(심사표 작성시간 포함)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 해당직무이해도(20점) -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점)
 -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 가능성(20점)
- 평가방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 이하)로 평정
 - 심사 위원의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0점이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 최종평점 : 응시자가 득점한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
 -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절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방법 : 면접심사 최종평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장애인 → ③ 자격증 다수 보유자 → ④ 인사위원회 심의

라. 합격자 관리

- 면접시험 평정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채용
- 합격자는 발생 소요 인력만큼 선발(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는 소요인원의 2배수만큼 부여)
 - * 단 해당 합격자는 해당 소요에 한하여 합격자로 인정되며, 이외 소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탈락자 및 미임용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자 풀에 다시 포함(단, 과락자 제외), 지원자 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본인이 요청 후 제외
- 대체인력뱅크 선발자 중 선(先)순위자가 임용 연기를 요청할 경우, 차순위를 임용 실시하며 선(先)순위자는 지원자풀에 다시 포함되며 선발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공단 소속이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공단 직원 신분을 취득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채용 기간에 한하여 직원 신분을 부여
- 결원기간이 연장되거나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판단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계약 종료자는 기존 지원서를 유지하며 지원자 풀에 재포함(수정사항 발생시 수정 후 지원서 유지)

마.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plus1037@yumcorp.or.kr) 제출 후 유선 확인 또는 방문제출
- 이의제기에 대한 검증 등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결과 별도 통보

바. 최종합격자 임용

- 부서 소요 발생 시 합격자 순위에 따라 장기복무 소요에 우선 임용
- 임용 대상자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고, 신원조사 및 성범죄 등 경력조회(경찰서, 등록기준지)결과 적격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 : 부서 요청일
- 임용 대상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임용으로 잔여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7. 기타사항

- 면접심사 이전 서류합격자가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 지원서의 보관 및 자격 유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원자가 기간 내 정보 수정 또는 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제한,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접수여부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사진포함)등 불합리한 차별(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응시자가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발언 할 경우 각 전형 심사자가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의 질문이 상기 사항의 발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하고, 신원조사 및 성범죄 등 경력조회(경찰서, 등록기준지)결과 적격하여야 합니다.
- 본 채용계획 및 심사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금회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후 공단의 채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반환 청구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청구 (반환청구서, 반환용 우표, 반환봉투를 우편으로 제출)**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문의사항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70-4219-4462)